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본 기관의 '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'은 '장기요양이용 제공계약'의 개요입니다. 아래에 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.



계약 기간

- ①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'인정유효기간'을 따른다.
- ② 제1항의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계약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본 기관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급여의 제공 및 이용 과정을 원활히 하고,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한다.

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「별표 1」과 같다.
-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액은 월별 집계하며 한 달에 간의 '1일 급여 비용 * 본인부담률'로 산정한다.
- ③ 이용자의 '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'와 무관한 개인적 요청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본 기관은 제공 의무와 책임이 없다.
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④ 기관이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응할 의무
- ⑤ 이용자의 월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
- ⑥ 이용자의 신변 정보 및 그 변동에 대한 고지 의무
- ⑦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
계약의 해제

- ① (갑) 또는 (병)은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(을)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 기간 만료
2. 제3조의 따라 계획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음
3. 제4조 2항의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및 요원을 (갑) 또는 (병)의 동의 없이 (을)이 임의로 변경
4. 그 밖에 갑에게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
5. (갑)의 건강상 서비스 이용 불능

- ② (을)은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(갑) 또는 (병)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제2조의 계약 기간 만료 또는 (갑)의 사망 | 4. (갑)의 중대한 서비스 제공 방해 |
| 2. (갑)의 등급외 판정 | 5. (갑)의 급여 제공 범위 외 요구 |
| 3.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(갑)의 감염 위험 판정 | 6. (갑) 또는 (병)의 성희롱, 괴롭힘 |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

적용 시작 2025. 1. 1.
적용 종료 2025. 12. 31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○ 방문요양 1일 급여 비용¹⁾ (원)

시 간	금 액	시 간	금 액
30분 이상	16,940	150분 이상	49,160
60분 이상	24,580	180분 이상	55,350
90분 이상	33,120	210분 이상	61,670
120분 이상	42,160	240분 이상	68,030

○ 본인부담률 (%)

구 분	요 율
· 일반	15%
· 저소득층	9%
·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²⁾	6%
· 기타 의료수급권자	0%
· 기초수급권자	0%

¹⁾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·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

²⁾ 희귀·난치성 및 만성 질환자